

제 출 문

『국내 영업비밀 관련 민·형사 판결문 분석』 연구용역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내 영업비밀 관련 민·형사 판결문 분석” 과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7월 31일

주관연구기관명 : 법률사무소 데이터로

연구기간 : 2023. 5. 24. ~ 2023. 7. 31.

주관연구책임자 : 정관영(법률사무소 데이터로 대표변호사)

참여 연구원 : 김성용(법률사무소 데이터로 전문위원)

— 보 고 서 —

2023. 7. 31.

법률사무소 데이터로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추진목표	2
2. 연구 추진범위 및 내용	3
가. 연구 추진범위	3
나. 연구 추진내용	3
II. 영업비밀 판결 분석	6
1. 분석대상 판결 현황	7
2. 영업비밀 유출 관련 분류 및 시사점	8
가. 피해 업종별 현황	8
o 기업의 업종과 영업비밀과의 관계	8
o 기업의 규모와 영업비밀 성립의 상관관계	12
나. 침해행위 주체별 현황	13
o 민사사건의 침해행위 유형·주체	15
o 형사사건의 침해행위 유형·주체	16
다. 영업비밀 정보(기술상, 경영상) 유형별 분석	17
o 정보 유형별 분석	17
o 민사사건 정보 유형별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 분석	19
o 형사사건 정보 유형별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 분석	21
o 형사사건 정보 유형별 부정경쟁방지법 유죄 판결 분석	22
라. 기업의 대응조치별 현황	23
o 기업의 비밀관리 조치에 따른 현황 분석	23
o 독립된 경제적 이익 요건별 현황	26

마. 영업비밀 성립요건별 현황	29
마. 영업비밀 성립요건별 특성 분석	30
o 특허출원과의 상관성 분석(특허출원으로 비공지성 요건 탈락하는지)	30
※ 【시사점】 피해회사의 특허출원으로 영업비밀 성립요건인 비공지성이 상실됐다고 주장하는 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상황별 판단	32
바. 영업비밀 특정 / 보호기간 도과 여부	38
o 영업비밀 특정의 문제	38
o 영업비밀 보호기간 도과 여부 빈도	40
※ 【시사점】 영업비밀 보호기간 관련하여	41
o 역분석과 영업비밀의 관련성	43
3. 영업비밀 유출 피해금액 분석	46
가. 손해배상청구 인용율 및 현황	46
나. 손해배상액 분석	49
4. 타법과의 비교	52
o 산업기술보호법	52
※ 【시사점】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유출·침해죄) 등 유사 법률과 영업비밀 침해죄와의 비교	53
o 부정경쟁행위(타인성과모용·아이디어탈취 등)	56
※ 【시사점】 영업비밀 침해와 부정경쟁행위(타인성과모용·아이디어탈취 등)와의 관련성	58
o 저작권법	59
※ 【시사점】 영업비밀 침해와 저작권법과의 관련성	60
o 업무상배임	61
※ 【시사점】 업무상배임 법리	63
o 특허법위반	65
III. 의의 및 한계	67

표 목차

표 1. 분석대상 기준	3
표 2. 2017 년~2022 년 영업비밀 관련 판결 총 집계	7
표 3. 영업비밀 사건 업종 분류	9
표 4. 기업 업종과 영업비밀 보호 조치별 빈도 수(민·형사 통합)	11
표 5. 기업 규모를 고려한 판결 결과	13
표 6. 침해행위 주체별 판결(민·형사 통합)	15
표 7. 침해행위 주체별 민사 판결	15
표 8. 침해행위 주체별 형사 판결	16
표 9. 영업비밀 침해 사건 정보 유형별 분류(민사)	18
표 10. 영업비밀 침해 사건 정보 유형별 분류(형사)	19
표 11. 정보 유형별 영업비밀성 분석(금지청구, 가처분 등 민사 일반)	20
표 12. 정보 유형별 영업비밀성 분석(민사 손해배상)	20
표 13. 정보 유형별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자산 분석(형사)	21
표 14. 정보 유형별 부정경쟁방지법 제 18 조제 1 항 및 제 2 항 유죄판결 분석	23
표 15.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조치 분류	24
표 16. 정보 유형별 비밀관리 조치에 따른 빈도 수(민사)	25
표 17. 정보 유형별 비밀관리 조치에 따른 빈도 수(형사)	26
표 18. 독립된 경제적 이익 판단 빈도 수(민사)	27
표 19. 독립된 경제적 이익 판단 빈도 수(형사)	27
표 20. 정보 유형별 독립된 경제적 이익 판단 빈도 수(민사)	28
표 21. 정보 유형별 독립된 경제적 이익 판단 빈도 수(형사)	29
표 21. 주요 쟁점별(영업비밀 성립요건별) 총 집계	30
표 22. 특허 출원된 정보의 영업비밀 인정 빈도(민·형사 통합)	31
표 23. 영업비밀 특정 여부 빈도(민·형사 통합)	39

표 24. 영업비밀 보호기간 도과 여부 빈도(민·형사 통합)	40
표 25. 영업비밀 민사 손해배상 인용율	46
표 26. 영업비밀 손해배상 사건 업종별 인용율	47
표 27. 영업비밀 손해배상 사건 정보 유형별 인용율	48
표 28. 영업비밀 침해 민사 손해배상액(판결금) 분석	49
표 29. 영업비밀 침해 민사 손해배상액 비율	50
표 30. 영업비밀 손해배상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 비율 분석	51
표 31. 영업비밀 유출과 산업기술 유출 쟁점 사건	52
표 32.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행위 쟁점 사건	56
표 33.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 쟁점 사건에서 부정경쟁행위별 분류	57
표 34. 영업비밀 유출과 저작권 쟁점 사건	59
표 35.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배임 쟁점 사건	62

I. 서론

1. 연구 추진목표

2. 연구 추진범위 및 내용

I. 서론

1. 연구 추진목표

최근 5년간 해외 기술유출 총 99건이 적발되었고,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약 22조원으로 추산(2017 ~ 2022. 2., 국정원)되며, 이 중에서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내 최첨단산업 분야의 영업비밀·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방법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모르는 기업이 많고, 전담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바, 전반적으로 영업비밀 유출에 대비한 관리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정부 지원 사업 운영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 영업비밀 판결문을 전수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다. 특히 본 연구는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과업 지시 사항에 주안점을 두었다.

- 영업비밀 유출 관련 피해 업종, 유출 주체 및 대응조치 등에 대한 분류 및 시사점 분석
- 국내 영업비밀 관련 판결문을 토대로 영업비밀 유출 관련 피해 업종, 유출 주체 및 대응조치 등에 대한 분류 및 시사점 분석
- 영업비밀 유출 손해배상 인용금액을 토대로 영업비밀 유출 피해금액 및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등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피해규모 파악
- 특허출원 등으로 인한 비공지성 요건 미충족 등 영업비밀 성립요건별 특성 분석

-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유출·침해죄) 등 유사 법률과 영업비밀 침해죄와의 비교 분석
- 영업비밀 보호기간 등 영업비밀 보호 관련 특이사항 파악 및 시사점 도출

2. 연구 추진범위 및 내용

가. 연구 추진범위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근 6년간 전국 각급 법원의 영업비밀 관련 판결 전체(민·형사 2,110 건의 판결문 및 결정문)을 분석하였다. 분석에서 외견상으로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지만 실제로는 영업비밀과 전혀 무관한 사건(예 :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자산 유출과 무관하게, 오로지 부정경쟁행위만 쟁점이 되거나 특허만 쟁점이 된 사건 등)은 제외했다.

표1. 분석대상 기준

분 석 대 상	기간	선고일 기준 2017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심급	1심, 2심, 3심 전체
	확정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 선고 사건 전체
	민사	본안(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손해배상 등) 및 가처분
	형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나. 연구 추진내용

○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제2조 제3호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6가지(가.목 내지 바.목)를 유형

화하고 있다.

○ 영업비밀의 유형은 업종별로 정형적인 패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분석하였다. 가령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산업은 기술적 정보를 영업비밀로 삼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음식점 프랜차이즈나 학원업은 경영적 정보를 영업비밀로 삼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류 결과 이러한 예상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유출 주체가 주로 누가 되는지, 기업의 대응조치는 전형적으로 어떠한지를 데이터 분석하였다.

○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피해 기업이 청구한 손해배상액과 법원이 선고하여 인용한 판결금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영업비밀 성립요건별 특성을 분석하고, 특히 기업이 특허를 출원하여 공지된 기술의 경우에도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사건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 산업기술보호법, 저작권법, 형법상 업무상배임 등 인접 법률과 영업비밀 침해죄를 비교 분석하였다.

○ 기타 구체적인 소송 내에서 영업비밀의 특정 여부를 다툰 사건과, 영업비밀 성립요건은 갖추었으나 보호기간이 도과되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였다.

II. 영업비밀 판결 분석

1. 분석대상 판결 현황
2. 영업비밀 유출 관련 분류 및 시사점
3. 영업비밀 유출 피해금액 분석
4. 타법과의 비교

II. 영업비밀 판결 분석

1. 분석대상 판결

본 연구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6년 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하여 영업비밀 분야에서 선고된 민·형사 판결문(가처분 결정문 포함. 이하 같음) 2,110건(무관판결 제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업종별 영업비밀 유출 현황, 유출주체별 현황, 기업의 대응조치, 영업비밀 성립요건별 현황, 침해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형, 손해배상 청구금액과 인용금액 현황 등 주요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고, 이러한 분류에 따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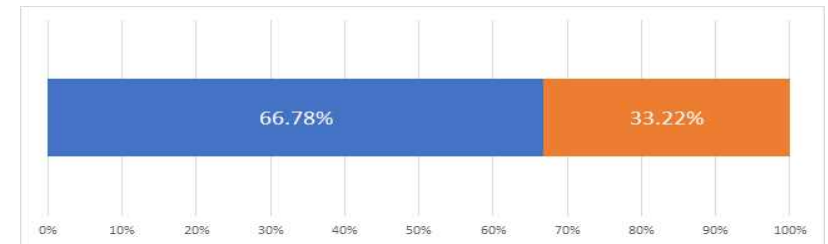
판결 전수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의 효과적인 영업비밀보호 지원사업 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함에 있다.

분석 대상은 선고일 기준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문과 결정문이다. 수집된 판결·결정문 중에서 무관판결을 제외한 영업비밀 관련 판결은 총 2,110건으로 파악되었다.

수집한 판결문을 연도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2. 2017년~2022년 영업비밀 관련 판결 총 집계

민사	형사	합계
1,409	701	2,110
66.78%	33.22%	100%



영업비밀 관련 판결은 민·형사 합하여 총 2,110건이었고, 이 중 민사사건은 1,409건, 형사사건은 701건이었다. 전체 판결 중 민사사건이 66.78%, 형사사건이 33.22%를 차지하였다.

2. 영업비밀 유출 관련 분류 및 시사점

가. 피해 업종별 현황

o 기업의 업종과 영업비밀과의 관계

전체 2,110건의 판결에서 나타난 영업비밀 정보의 내용에 따라 ‘산업통계 분석시스템’ ISTANS(Industrial Statistics Analysis System, 아이스탠스)의 40대 제조업, 20대 서비스 산업별 분류를 준용 및 참조하여 총 22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제조업 카테고리에서 기계/정밀기기는 376건, 자동차/항공/선박은 94건, 제조 일반은 118건으로 나타났고, 전기/전자 카테고리에서 컴퓨터/전자부품은 200건, 반도체는 82건, 디스플레이는 55건, 전지는 17건, 가전은 5건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통신 카테고리 중에서 정보통신공사는 30건,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은 138건, 통신기기는 23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폭넓은 카테고리인 서비스에서는 프랜차이즈가 155건, 교육·학원업이 122건, 판매·도소매가 167건, 운수·보관이 26건, 서비스 일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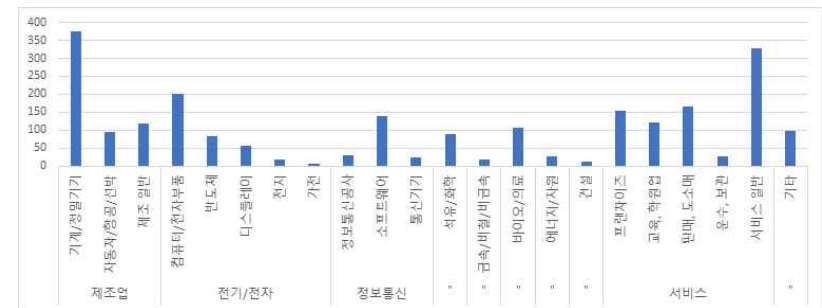
328건으로 나타나 가장 많이 집계되었다. 그밖에 석유·화학이 88건, 금속·비철·비금속이 18건, 바이오·의료이 106건, 에너지·자원이 28건, 건설 13건으로 나타났고, 기타¹⁾ 97건으로 확인되었다(아래 표). 이를 통해 전통적인 제조업과 기계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 조치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컴퓨터, 전자부품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서도 영업비밀 보호 조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 업종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영업비밀 보호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3. 영업비밀 사건 업종 분류

업종 대분류	업종 소분류	사건 수
제조업 (588건)	기계/정밀기기	376
	자동차/항공/선박	94
전기/전자 (359건)	제조 일반	118
	컴퓨터/전자부품	200
	반도체	82
	디스플레이	55
	전지	17
정보통신 (191건)	가전	5
	정보통신공사	30
	소프트웨어	138
	통신기기	23
석유/화학	석유/화학	88
금속/비철/비금속	금속/비철/비금속	18
바이오/의료	바이오/의료	106
에너지/자원	에너지/자원	28

1) 산업통계 분석시스템 아이스텐스에 포접하기 곤란하거나 애매한 업종들을 '기타'로 분류하였다.

건설	건설	13
서비스 (798건)	프랜차이즈	155
	교육, 학원업	122
	판매, 도소매	167
	운수, 보관	26
	서비스 일반	328
기타	기타	97



서비스 분야는 업종이 다양하고 범위가 넓은 관계로 지나치게 세분화하다 보면 지엽말단적인 분류가 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건수가 적은 업종은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사건의 업종(영업비밀 분쟁 분야)이 주로 '판매, 도소매(167건)', '프랜차이즈(155건)', '교육, 학원업(122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수확이라고 자평한다.

본 연구는 위 산업별 분류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 조치의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아래 표와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불문하고 각 산업별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분야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계/정밀기기(376건)’ 업종에서 영업비밀 보호 조치가 가장 두드러졌고,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컴퓨터/전자부품(200건)’ 업종,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138건)’ 업종에서 영업비밀 보호 조치가 많았다.

표4. 기업 업종과 영업비밀 보호 조치별 빈도 수(민·형사 통합)²⁾

구분	제도적 관리			인적 관리				물리적 관리				합 계
업종 분류	등급 분류	표시/ 고지	규정	서약 서	교육	징계/ 보상	분리 보관	출입 통제	접근 대상 자 제한	반출 제한	접근 제한(비번)	
기계/정 밀기기	31	84	79	241	57	5	34	64	81	49	105	830
자동차/ 항공/선 박	17	21	23	58	23	2	16	20	33	18	30	261
제조 일반	10	23	16	66	14	1	6	17	26	15	33	227
컴퓨터/ 전자부품	23	39	32	152	28	7	14	31	41	30	58	455
반도체	14	82	15	62	12	10	6	9	24	13	29	276
디스플레이	15	19	18	45	15	1	9	13	26	14	23	198
전자	6	4	3	15	5	0	4	5	7	4	7	60
가전	3	2	3	5	2	0	1	2	1	2	1	22
정보통신 공사	4	6	7	19	5	0	2	4	5	5	8	65
소프트웨 어	9	11	16	74	13	7	16	11	24	10	23	214
통신기기	1	3	1	8	2	1	1	3	2	0	8	30
석유/화 학	7	25	26	59	21	7	12	23	26	14	32	252
금속/비 철/비금 속	2	7	3	16	2	0	1	2	5	2	4	44
바이오/ 의료	7	17	14	69	15	3	1	10	20	8	26	190
에너지/ 자원	7	9	8	17	7	0	2	4	10	3	9	76
건설	1	3	0	8	2	0	1	0	1	2	1	19
프랜차이즈	6	15	10	75	10	0	2	4	14	2	19	157

2) 2개 이상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례도 있어서 중복 데이터가 발생함.

교육, 학원업	5	13	2	72	1	2	1	1	10	1	11	119
판매, 도소매	12	21	17	111	17	3	7	12	23	10	43	276
운수, 보관	1	5	1	16	3	3	0	1	2	1	3	36
서비스 일반	18	45	27	183	27	5	14	16	45	25	59	464
기타	1	2	2	29	1	3	1	1	8	4	6	58
합계	200	456	323	1,400	282	60	151	253	434	232	538	

전체 민·형사 사건 중 법원이 서약서 징구를 비밀관리 요소로 언급한 사건은 1,4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접근제한(비밀번호 등)이 538건, 영업비밀 표시/고지는 456건, 접근대상자 제한은 434건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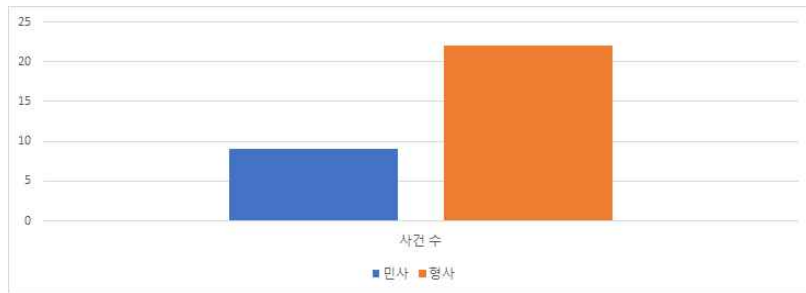
분석 결과 기계/소재와 컴퓨터/전자제품과 반도체 분야에서 영업비밀 보호 조치를 많이 취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법원이 업종별로 취해야 할 영업비밀 관리 조치의 내용을 달리 보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예 : 법원이 반도체 업종에서는 제도적 관리보다 물리적 관리를 더 중요하게 본다거나,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물리적 관리보다 인적 관리를 더 중요하게 보는 등).

o 기업의 규모와 영업비밀 성립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법원이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 자본금 등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영업비밀 침해 및 보호조치 여부를 판단한 사건은 31건(민사 9건, 형사 22건)으로 확인되었다.

표5. 기업 규모를 고려한 판결 결과

구분	사건 수
민사	9건
형사	22건
합계	31건



분석 대상 판결 데이터의 표본 수가 너무 적어서(31건), 이것만으로는 법원이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밀관리성을 완화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지,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까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나. 침해행위 주체별 현황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가. 제3자에 의한 부정취득행위, 나. 제3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다. 부정취득행위에 관한 사후적 관여행위, 라. 비밀유지의무위반자의 부정공개행위, 마.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 취득행위, 바. 부정공개행위에 관한 사후적 공개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에서 자주 적용되는 목은 라.목이고 가.목도 종종 언급된다. 각 목

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 가목 제3자의 부정취득행위 등 :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나목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다목 부정취득행위에 관한 사후적 관여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라목 비밀유지의무자의 부정공개행위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마목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 바목 부정공개행위에 관한 사후적 관여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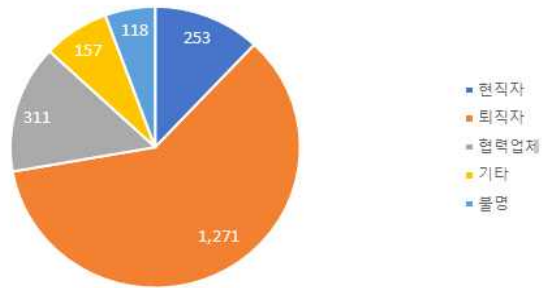
라.목에 해당하는 유출주체로는 퇴직자와 현직자, 그리고 협력업체가 대표적이다. 이중에서 “퇴직자”가 60.02%(1,271/2,110), “현직자”가 11.99%(253/1,210)를 차지하여 회사 내부자가 도합 0.7201%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외부자로는 단연 “협력업체”(14.74%)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침해행위 주체별로 분석한 결

과는 아래와 같다.

표6. 침해행위 주체별 판결(민·형사 통합)

침해주체	현직자	퇴직자	협력업체	기타	불명	합계
건수	253	1,271	311	157	118	2,110
비율	11.99%	60.02%	14.74%	7.44%	5.5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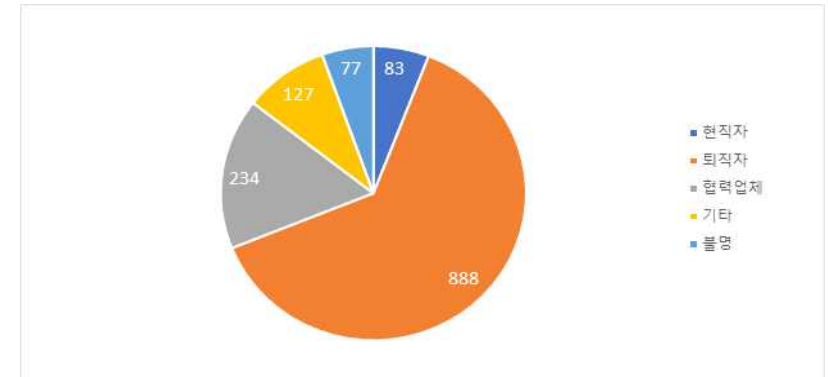
o 민사사건의 침해행위 유형·주체

영업비밀침해 민사사건에서 침해행위 주체별로 살펴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7. 침해행위 주체별 민사 판결

침해행위 주체	현직자	퇴직자	협력업체	기타	불명	합계 ³⁾
건수	83	888	234	127	77	1,409
비율	6.24%	63.02%	16.61%	9.01%	5.55%	100%

3) 현직자·퇴직자 등 주체가 다수이거나 피고인이 다수인 경우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중복데이터 발생.



조사 결과 영업비밀 침해행위 민사사건의 주체는 퇴직자가 63.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협력업체가 16.61%로 매우 많았다. 협력업체 임직원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협력업체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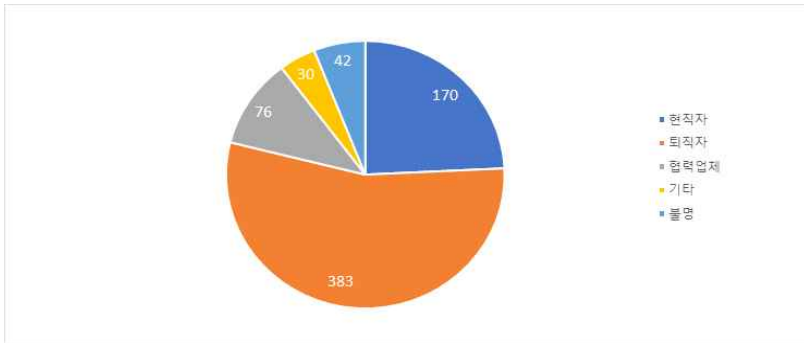
o 형사사건의 침해행위 유형·주체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업무상배임 포함)을 침해 주체별로 살펴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8 침해행위 주체별 형사 판결

침해행위 주체	현직자	퇴직자	협력업체	기타	불명	합계 ⁴⁾
건수	170	383	76	30	42	701
비율	24.25%	54.64%	10.84%	4.28%	5.99%	100%

4) 현직자·퇴직자 등 주체가 다수이거나 피고인이 다수인 경우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중복데이터 발생.



조사 결과 영업비밀 침해행위 형사사건의 주체 역시 퇴직자가 54.64%, 현직자가 24.25%로 내부자가 도합 78.89%에 달했다. 퇴직자가 현직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사실상 회사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직원이 침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협력업체 임직원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재직 중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기 보다는 퇴직 전후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계획하고 퇴직 후 회사를 설립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기타는 동종업체 운영자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경쟁업체 임직원, 경쟁사업 제안자 등이다.

다. 영업비밀 정보(기술상, 경영상) 유형별 분석

o 정보 유형별 분석

법원 판결에서 쟁점이 된 영업비밀을 민사·형사 사건 및 정보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민사에서는 경영정보가 418건, 기술정보가 393건, 기술정보와 경영정보 모두 침해되었다고 주장된 사건도 310건에 달하였

다. 형사에서는 경영정보 175건, 기술정보 393건, 기술정보와 경영정보 모두 침해되었다고 주장된 사건 310건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기술정보와 경영정보 모두 폭넓게 유출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업무상배임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는 기술·경영 정보를 불문하고 ‘영업상 중요자산’으로 분류하여 데이터세트에 편입시켰는데, 유독 형사에서 업무상배임 쟁점으로 영업상 중요자산이 유출된 사건이 많았다. 이는 검사가 영업비밀 유출 형사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를 보충적으로 기소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9. 영업비밀 침해 사건 정보 유형별 분류(민사)

구분	전체
기술정보	393
경영정보	418
기술+경영정보	310
영업상 중요자산(기술·경영 불문)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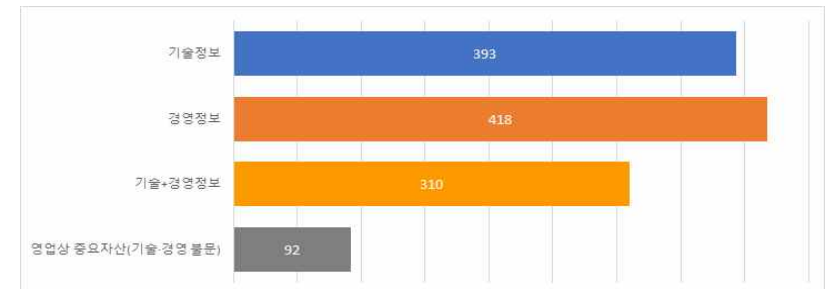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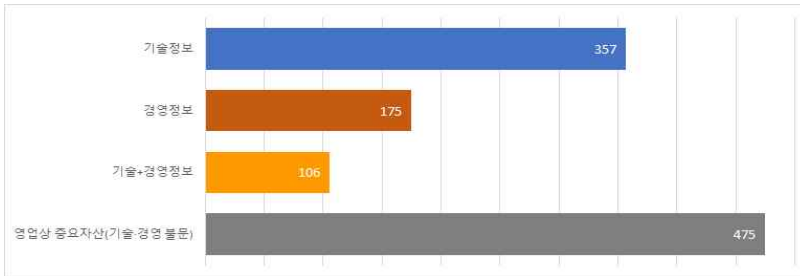


표10. 영업비밀 침해 사건 정보 유형별 분류(형사)

구분	전체
기술정보	357
경영정보	175
기술+경영정보	106
영업상 중요자산(기술·경영 불문)	475



o 민사사건 정보 유형별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 분석

기술정보가 유출된 판결 중에서 민사 청구(금지·가처분)의 경우 영업비밀로 인정된 비율은 31.55%(124건/393건)이었고,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영업비밀로 인정된 비율은 36.1%(74건/205건)로 나타났다.⁵⁾

경영정보가 유출된 판결 중에서 민사 청구(금지·가처분)의 경우 영업비밀로 인정된 비율은 19.38%(81건/418건)였고,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영업비밀로 인정된 비율은 16.33%(16건/98건)였다.

그리고 기술정보와 경영정보 전부가 유출된 판결 중에서 민사 청구(금지·가처분)의 경우 영업비밀로 인정된 비율은 30.00%(93건/310건)였고,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영업비밀로 인정된 비율은 40.54%(60건/148건)로 나타났다.

5) 금지·예방 기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소송이 있어서 일부 데이터가 중복되었다.

표11. 정보 유형별 영업비밀성 분석(금지청구, 가처분 등 민사 일반)

구분	전체	인정	부정
기술정보	393	124	251
		31.55%	63.37%
경영정보	418	81	312
		19.38%	74.64%
기술+경영정보	310	93	207
		30%	66.77%
영업상 중요자산	92	34	40
		36.96%	4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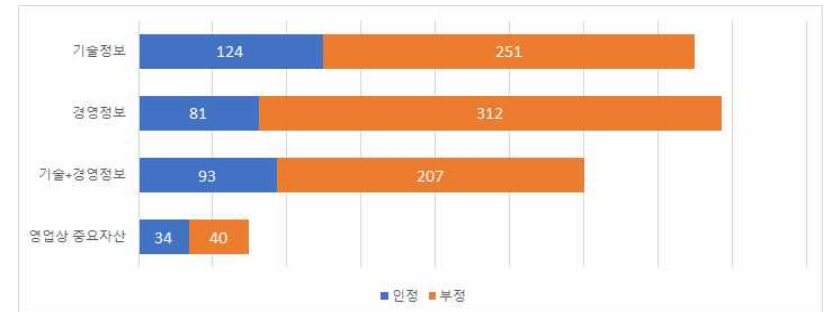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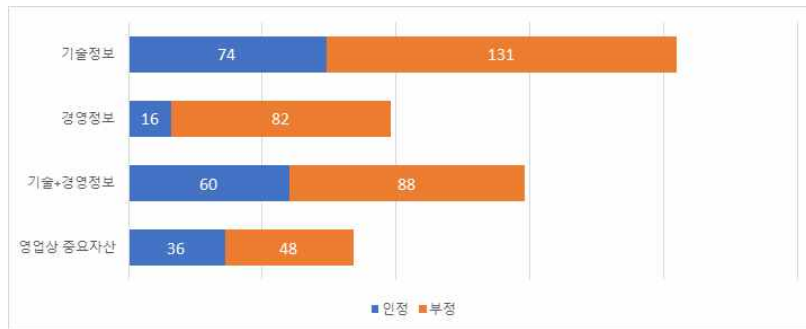


표12. 정보 유형별 영업비밀성 분석(민사 손해배상)

구분	전체	인정	부정
기술정보	205	74	131
		36.10%	63.90%
경영정보	98	16	82
		16.33%	83.67%
기술+경영정보	148	60	88
		40.54%	59.46%
영업상 중요자산	84	36	48
		42.86%	5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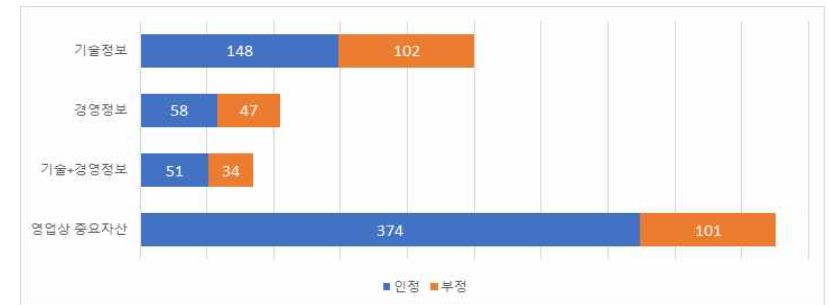
o 형사사건 정보 유형별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 분석

영업비밀 유출 형사소송의 경우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 영업비밀 유출 범죄와 더불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를 적극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분석하였다. 즉 부경법상 영업비밀 유출로 기소하였으나 유·무죄 판결이 나온 판결들과, 형법상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하였으나 유·무죄 판결이 나온 판결들을 나누어 분석했다.⁶⁾

표13. 정보 유형별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자산 분석(형사)

구분	전체	인정	부정
기술정보	250	148	102
		59.20%	40.80%
경영정보	105	58	47
		55.24%	44.76%
기술+경영정보	85	51	34
		60.00%	40.00%
영업상 중요자산	475	374	101
		78.74%	21.26%

6) 다만 검사가 부경법상 영업비밀 유출과 형법상 업무상배임 두 범죄사실을 동시에 기소하는 경우가 많아 중복 데이터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검사가 부경법상 영업비밀 유출로 기소한 사건 중에서 기술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유죄 59.20%(148건/250건), 무죄 40.80%(102건/250건)로 나타났다, 경영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유죄 55.24%(58건/105건), 무죄 44.76%(47건/105건)로 집계되었으며, 기술 및 경영정보 모두 유출된 사건은 유죄 60.00%(51건/85건), 무죄 40.00%(34건/85건)로 집계됐다.

검사가 형법상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한 영업상 중요자산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된 비율은 78.74%(374건/475건), 무죄가 선고된 비율은 21.26%(101건/475건)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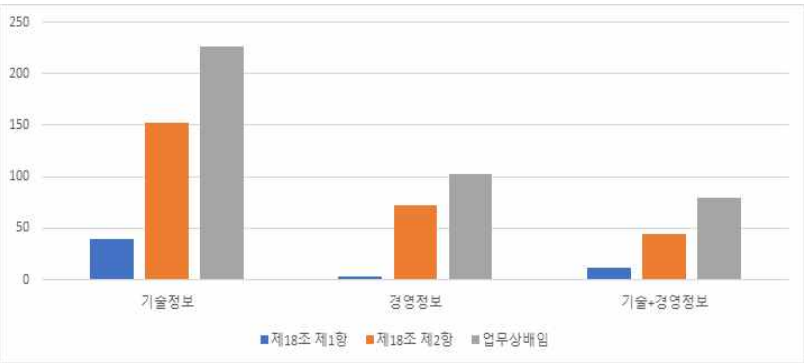
o 형사사건 정보 유형별 부정경쟁방지법 유죄 판결 분석

나아가 법원의 형사 판결에서 쟁점이 된 영업비밀을 정보 유형을 다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과 형법상 업무상배임으로 나누어 분석한바, 기술정보가 25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경영정보는 105건, 기술정보와 경영정보 모두 유출된 것으로 기소된 건은 85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검찰은 영업비밀 침해 형사 사건에서 주로 기술

정보 유출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기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4. 정보 유형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유죄 판결 분석⁷⁾

구분	전체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업무상배임
기술정보	357	39	153	227
경영정보	175	3	72	103
기술+경영정보	106	11	44	80



라. 기업의 대응조치별 현황

o 기업의 비밀관리 조치에 따른 현황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조치를 아래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다. 크게 제도적 관리, 인적 관리, 물리적 관리로 분류하고, 다시 세부 내용에 따라 하위 조치를 구분하였다. (아래 분류표 참조)

7) 중복 기소에 따른 데이터 중첩 포함.

표15.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조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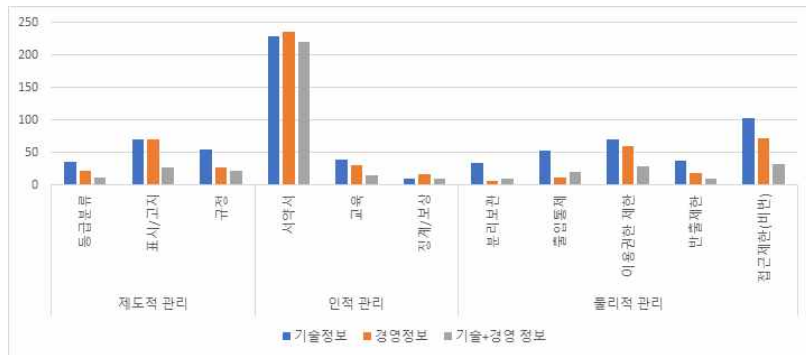
보호조치		내용
제도적 관리	등급분류	영업비밀 또는 중요한 자산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
	표시/고지	영업비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하였거나 고지
	규정	각종 영업비밀 보호 규정
인적 관리	서약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계약 등 영업비밀 보호 약정
	교육	영업비밀 보호 관련 교육
	징계/보상	영업비밀 보호 관련 징계 또는 보상
물리적 관리	분리보관	영업비밀을 일반 정보와 분리된 장소에 보관
	출입통제	영업비밀이 보관된 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
	이용제한	영업비밀 접근·권한을 임직원 별로 구분·제한
	반출제한	영업비밀 외부 반출 통제
	접근제한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제한(비밀번호 등)

먼저 민사사건에서 영업비밀 정보 유형별 보호관리 조치의 빈도수를 살펴보면, 기술정보와 경영정보 통틀어 공히 서약서 징구가 많이 활용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기술정보와 경영정보 모두에서 접근제한 조치(비밀번호 등)와 표시/고지가 많이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기술정보에서는 이용권한 제한(70건)이, 경영정보에서는 이용권한 제한(59건)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서약서, 이용권한 제한 조치, 표시/고지가 영업비밀 보호관리 조치로 자주 활용되었고, 기술정보의 경우 ‘규정’과 ‘출입통제’도 자주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6. 정보 유형별 비밀관리 조치에 따른 빈도 수(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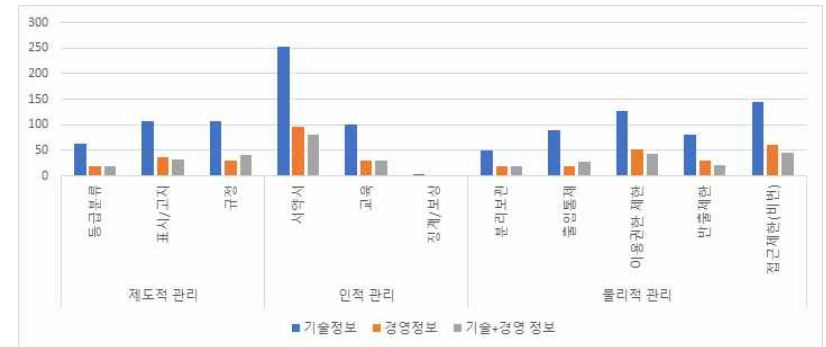
구분	제도적 관리			인적 관리		물리적 관리					
판단 요소	등급 분류	표시/고지	규정	서약서	교육	징계/보상	분리 보관	출입 통제	이용 권한 제한	반출 제한	접근 제한(비번)
기술 정보	35	70	54	228	39	10	34	53	70	38	102
경영 정보	22	70	27	235	30	16	7	11	59	18	72
기술+경영 정보	11	27	21	220	14	10	9	20	28	10	32
합계	68	167	102	683	83	36	50	84	157	66	206



다음으로 형사사건에서 영업비밀 정보 유형별 보호관리 조치의 빈도수를 살펴보면, 민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 통틀어 공히 서약서 정구가 많이 활용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기술정보와 경영정보 모두에서 접근 제한 조치(비밀번호 등)이 많이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에 서 공히 이용권한 제한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7. 정보 유형별 비밀관리 조치에 따른 빈도 수(형사)

구분	제도적 관리			인적 관리		물리적 관리					
판단 요소	등급 분류	표시/고지	규정	서약서	교육	징계/보상	분리 보관	출입 통제	이용 권한 제한	반출 제한	접근 제한(비번)
기술 정보	63	107	108	253	100	3	49	90	128	81	145
경영 정보	18	36	29	97	29	2	18	20	52	31	61
기술+경영 정보	19	33	40	81	29	1	18	27	44	22	46
합계	100	176	177	431	158	6	85	137	224	134	252



정리하면 서약서, 접근제한 조치, 이용권한 제한이 영업비밀 보호관리 조치로 자주 활용되었고, 기술정보의 경우 '표시/고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자주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o 독립된 경제적 이익 요건별 현황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독립된 경제적 이익'은 비밀관리 조치 대비 덜

중요하게 다뤄진 게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세분하여 분석하였고, 이로써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법원은 민·형사 공히 ‘동종업계에 알려지지 아니한 정보’인지, ‘원고만이 가진 기술’인지에 따라 독립된 경제적 이익과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이 확연했다. 나아가 원고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투입’한 경우에 해당 정보에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표18. 독립된 경제적 이익 판단 빈도 수(민사)

동종업계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 / 원고만의 기술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 투입	(압도적인) 시장점유율	기타 소명부족
564	85	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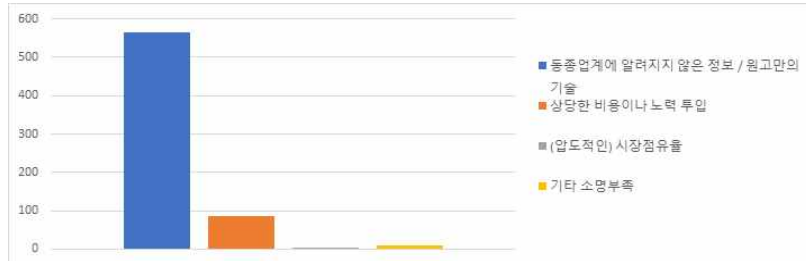


표19. 독립된 경제적 이익 판단 빈도 수(형사)

동종업계에 안 알려진 정보 / 원고만의 기술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 투입	(압도적인) 시장점유율	기타 소명부족
262	131	18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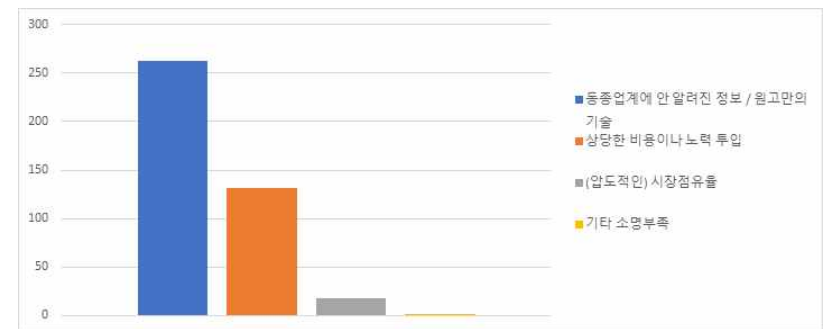


표20. 정보 유형별 독립된 경제적 이익 판단 빈도 수(민사)

구분	동종업계에 안 알려진 정보 / 원고만의 기술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 투입	(압도적인) 시장점유율	기타 소명부족
기술정보	167	35	3	3
경영정보	160	31	0	0
기술+경영정보	162	8	1	3
합계	489	74	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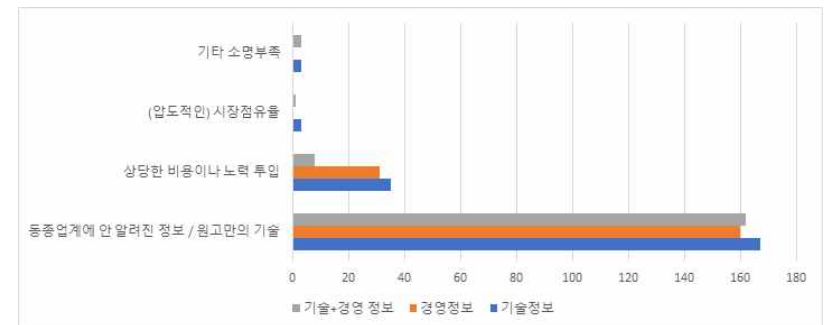


표21. 정보 유형별 독립된 경제적 이익 판단 빈도 수(형사)

구분	동종업계에 안 알려진 정보 / 원고만의 기술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 투입	(압도적인) 시장점유율	기타 소명부족
기술정보	139	73	12	2
경영정보	67	37	3	0
기술+경영 정보	60	24	3	0
합계	266	134	18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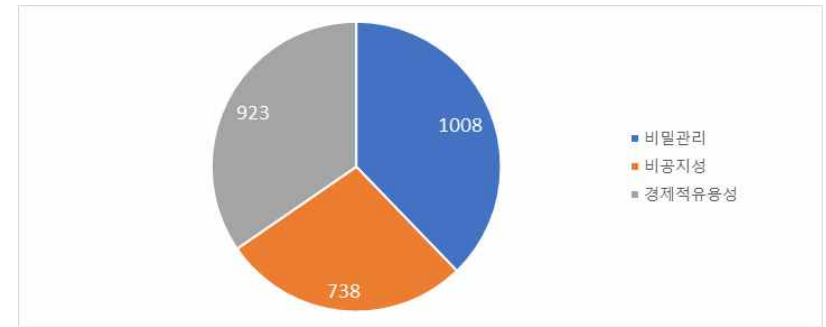


마. 영업비밀 성립요건별 현황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여야 하고(비공지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 보유자가 비밀로 관리한 것이어야만 한다(비밀관리성). 이러한 성립요건에 따라 판결문을 분류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21. 주요 쟁점별(영업비밀 성립요건별) 총 집계

비밀관리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1008	738	923
47.77%	34.98%	43.74%



분석결과 민·형사 사건을 통틀어 “비밀관리” 쟁점이 47.77%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적 유용성” 43.74% “비공지성” 34.98%, 순으로 나타났다.

마. 영업비밀 성립요건별 특성 분석

o 특허출원과의 상관성 분석(특허출원으로 비공지성 요건 탈락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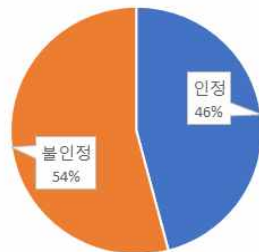
회사의 기술정보에 관하여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해당 기술의 개요와 명세가 상당 부분 공개된다. 그렇다면 기술정보를 특허 출원할 경우 ‘영업비밀’로서는 보호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즉 특허 출원으로 말미암아 영업비밀 요건 중 ‘비공지성’ 요건이 탈락되는 것인지,

그리하여 회사의 기술정보 보호가 특허와 영업비밀 양자택일의 문제인지가 실무상 중요하다.

그러나 판결 분석 결과 양자택일의 단순한 관계는 아님이 밝혀졌다. 즉, 특허 출원으로 기술정보가 공개되어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요건이 탈락된다. 단순한 도식 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회사의 핵심기술을 영업비밀로 가일층 보호하기 위해 특허 출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아래는 판결 분석을 통해 특허 출원된 정보에 관하여 법원이 영업비밀로 인정한 빈도를 조사한 결과다.

표22. 특허 출원된 정보의 영업비밀 인정 빈도(민·형사 통합)

특허출원 기술정보 합계	인정	불인정
61	28	33
100%	45.90%	54.10%



예를 들어 검사가 피고인을 영업비밀침해로 기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는 ‘특허공보에 공개되는 등으로 비공지성을 상실’하였고, 비밀로서 관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AF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AG에 게재된 AH라는 명칭의 특허발명, AI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AJ에 게재된 W라는 명칭의 특허발명 및 이 사건 제1 내지 3특허발명을 통해 이 사건 자료가 공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의 두 특허발명은 아래 다. 1) 나) (1)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차이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자료에 담긴 자전거 관련 기술과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제1 내지 3특허발명에 관한 각 등록특허공보에는 L, Q, R의 기술내용과 원리 그리고 개략적인 도면이 개시되어 있을 뿐이며, 이 사건 자료 중 어느 것도 위 각 등록특허공보에 의해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해당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한 영업비밀로서 보호 받아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단690, 2020고단236(병합) 판결].

요컨대 특허 출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공지 기술이 되어 영업비밀성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해당 기술정보 중에서도 공개된 부분과 공개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전자만 특허 출원으로 공개되고 후자는 공개하지 아니한 채 비밀로 관리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도 있다면, 후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있다는 취지다.

※ 【시사점】 피해회사의 특허출원으로 영업비밀 성립요건인 비공지성이 상실됐다고 주장하는 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상황별 판단

가. 서설

주장하는 기술이 특허출원 및 등록된 경우 해당 기술은 공개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해당 기술에 대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중 비공지성이나 비밀유지성이 상실된다고 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17노162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0941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자산(자료)이 특허출원으로 공개되기 전(특허법 제64조)의 경우에는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과 비밀유지성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21노1669 판결 참조). 그러나 주장하는 기술 및 영업상 주요 자산이 특허출원 및 등록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비공지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즉 단순히 선행특허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발명에 관한 자료들이 비공지성을 결여하게 되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미 출원 공개된 발명과 관련이 있는 발명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선행특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기 쉽지 않으며, 해당 발명의 구체적 기능 구현을 위해 상당 기간 상당한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비로소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로서 독립적인 기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발명과 그와 관련된 자료들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해당 기술 분야 종사자가 출원, 등록된 특허 등 이미 공개된 관련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해당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면 비록 공개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비공지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때에는 특허 출원된 부분에 대하여 그 출원된 내용 이외에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비공지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비로소 비공지성이 상실되지 않았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상대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기술 등 중요자산에 대해 영업비밀성을 탄핵하기 위해 비공지성을 문제 삼는 것이 소송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리

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특허 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 구성에는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3항, 제4항),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공개된 자료를 보고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 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다60610 판결). 비록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언히 알려져 있어(이른바 공개된 특허) 그 자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문제의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 등이 공언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이나 그에 관한 정보라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98다45751 판결 참조).

또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판단할 있어 영업비밀은 특허와 같은 엄격한 신규성이나 발명임을 요하지 않아서 그 범위가 특허의 경우보다 넓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특허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발명에 관한 자료들이 비공지성을 결여하게 되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개된 외국의 특허출원 서류에 문제되는 기술이나 제품의 설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문제되는 발명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3도3044 판결 참조). 이를테면 어떠한 기술적 사상이 공지된 것으로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술적 사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술상의 정보 즉, 노하우(Know-how)는 독자적인 가치가 있고, 해당 업체에

의하여 그것이 비밀로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상의 정보 자체에 대하여 별도의 비공지성·경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4나4592 판결 참조).

다. 형사사건 사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특허출원 및 등록 등 비공지성 상실과 관련하여 피해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성립을 부정(또는 인용)하는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쟁점이 된 파일들에 포함된 산업기술은 대부분 특허를 통하여 공개된 내용들이어서 파일들을 복사하였다고 하여 산업기술의 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회사의 이 사건 기술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부 내용이 특허로 공개되어 있다고 하여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672 판결 참조).

2) 피고인들은 ○○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배합비와 같은 내용이 이미 특허로 등록된 상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비공지성 상실을 문제 삼았다. 이에 법원은 “피해회사의 대표자는 위 특허와 달리 자신들만 사용하는 재료와 배합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특허 명세서만으로는 이 사건 배합비가 이미 공개되어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고단428 판결 참조).

3)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이 된 기술파일이 이미 공개된 ○○특허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미 공지된 기술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특허는 제1세라믹 입자 구성요소의 표면에 제2구성 요소의 혼합물의 균일한 분산을 가지는 세라믹 유전체 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 '코어-셸 입자'를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피해회사의 위 특허의 개념과 부합하나, 피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여러 종류의 첨가제들을 첨가하여도 첨가제들이 코어 입자의 표면에 균질하게 분포하는 복합입자의 제조방법 또는 잔류 탄소 함량이 적고 동시에 코어 입자의 과대한 성장이 발생하지 않는 복합입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다원소 코팅방법 등은 ○○특허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법원은 위 자료가 ○○특허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 즉 비공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736 판결 참조).

4)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제작한 ○○에 관한 핵심 기술의 내용이 피해회사의 특허출원을 통해 공개되었으므로 위 甲 설계 도면들에 담긴 정보는 이미 공지된 것이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특허출원을 통해서 공개된 ○○ 제작과 관련한 도면은 ○○ 제작 과정 중 일부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기술적 사상의 내용이 실제 기계 제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세한 전체 설계 도면의 제작이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과 비용 및 노력이 필요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출원만으로는 위 설계 도면에 담긴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허출원 외에 달리 피해회사의 甲 제작과 관련한 설계 도면의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졌다고 볼 다른 자료를 찾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230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노2861 판결 각 참조).

5) 법원은 해당 사건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비록 “해당 사건 자료의 대상인 ‘○○○○’ 장치가 특허로 등록되어 일부 내용이 개략적으로 공개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해당 사건 자료는 구체적인 가공방법, 재료 등이 기재된 기계도면이거나 해당 기계에 사용되는 부품의 규격, 재

질 등이 기록된 부품목록으로서 이러한 기계도면이나 부품목록 등이 공개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566 판결 참조).

라. 민사사건 사례

1) 특허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 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다60610 판결), 이는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허 출원된 기술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려면 어떠한 기술이 영업비밀로 관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비공지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는 해당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채권자의 영업비밀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특허의 기술방법의 내용으로 자신이 출원하여 공개된 특허등록 출원서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서에 나타난 내용, 구성 및 특징이나 효과 등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을 뿐 해당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밀관리성 요건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어떠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위 기술방법을 비밀로 유지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소명을 한 바 없고, 제출된 자료를 살펴봐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실질적인 내용은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출원, 공개되어 이미 공지된 것이므로 그 영업비밀성을 상실하였고 나아가 채권자가 공개된 기술 이외의 영업비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7카합50303 결정 참조).

2) 채권자는 유기금속화합물 및 반도체 소재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관련된 발명을 특허출원 하였으며 이 발명은 공개되었다. 그러던 중 채권자 회사에 입사한 후 퇴사한 채무

자는 채권자의 기술을 취득하여 타 회사에서 사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비록 채권자 보유의 기술과 관련된 발명이 공개되기는 하였으나 그 발명의 출원시기 및 공개시기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취득한 지식 또는 정보가 보호 가치가 적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 채권자와의 전직금지 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 영업비밀 특정 / 보호기간 도과 여부

o 영업비밀 특정의 문제

(가) 관련 법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마1624 결정 참조).

특히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하여 종전의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구하는 경우,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 받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특정 법리에 근거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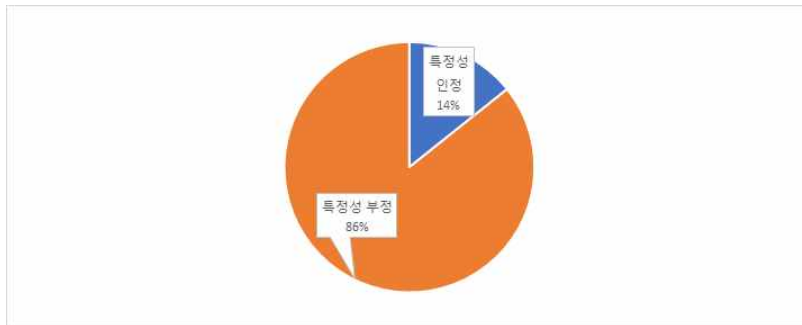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측(민사사건의 원고/신청인, 형사사건의 고소인/피해자)에서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넓게 잡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영업비밀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할 경우 상대(민사사건의 피고/피신청인, 형사사건의 피고소인/피고인) 입장에서는 방어해야 할 범위가 너무 넓어 불측의 법률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나 피고인 측의 방

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업비밀이 어느 정도 특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영업비밀 특정 여부가 쟁점이 된 판결을 분석하여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표23. 영업비밀 특정 여부 빈도(민·형사 통합)

영업비밀 특정 여부 쟁점사건 합계	특정성 인정	특정성 부정
70	10	60
100%	14.29%	85.71%



분석 결과 영업비밀 특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70건 중 무려 60건에서 영업비밀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자사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지정 및 표시/고지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방증하고, 소송 기술적으로도 영업비밀을 적절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쨌거나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이 피

해자(원고/신청인/검사) 측의 손을 들어주는 어려울 것이다.

o 영업비밀 보호기간 도과 여부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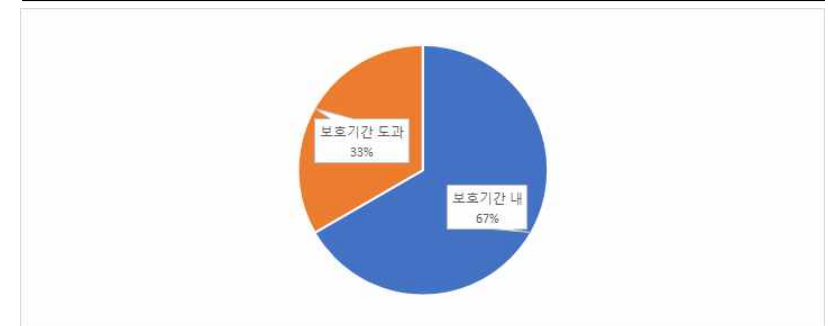
피고 또는 피고인 측이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도과되었다’면서 부정 경쟁방지법 적용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들이 있다.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영구적으로 보호해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자칫 해당 영업비밀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영업비밀 보호기간 도과 여부가 쟁점이 된 판결을 분석하여 특이사항을 파악해보았다.

표24. 영업비밀 보호기간 도과 여부 빈도(민·형사 통합)

영업비밀 보호기간 도과 쟁점사건 합계	보호기간 내	보호기간 도과
24	16	8
100%	66.67%	33.33%



※ 【시사점】 영업비밀 보호기간 관련하여

가. 서설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기술 파일의 개발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당 기술 파일과 같은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로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한 산업기술 보호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headstart)' 내지 '시간절약(lead time)'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대법원 96다16605 판결),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

법원 97다24528 판결 참조).

한편, 영업비밀 침해 금지기간의 기산점은 피고인들이 그 영업비밀 취급업무에서 이탈한 때인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7다24528 판결, 대법원 2002마4380 결정 등 참조).

다. 형사사건에서 살펴볼 사항

따라서 법원이 영업비밀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살필 때 다음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판단한바, 아래 사항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①피해회사가 기술정보의 취득을 위하여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 인력을 투입하였는지, ②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었는지, ③제품 공급시장에서 매우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는지, ④이를 제작하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는지, ⑤피해회사가 제작하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후발업체의 제품출시가 별달리 없었던 점에 비추어 제품을 역설계하여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거나 오랜 개발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⑥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수년 동안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기술정보 개발에 기여하여 그 기술의 우수성과 영업적 가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은 물론 그러한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 ⑦피고인이 작성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에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어느 기간 동안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고 기재했는지, ⑧만일 피고인들과 피해회사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이 있다면 관련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기술정보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기간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어느 정도의 기간(ex, 1년 2년 3년 등)으로 정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o 역분석과 영업비밀의 관련성

역분석은 상대의 영업비밀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파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역분석으로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면 해당 자료(기술 등)는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17노162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카합10208 결정 참조). 그러나 역분석이 가능하다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영업비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대법원 96다16605 판결, 대법원 98도4704 판결 등 참조)은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역분석과 영업비밀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다만 역분석이 판결이유에 언급된 사건은 총 11개(민사 8건, 형사 3건)로 파악되어 자주 언급되는 쟁점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참고로 법원은 단순히 역분석(역설계)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요건을 탈락시키지는 아니하는 경향이다. 예를 들어 인쇄회로기판 1개 역설계에 약 10일, 총 12개 인쇄회로기판 역설계에 최소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사건에서 법원은 “O은 이 사건 J파일을 취득한 후 2개월이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총 12개의 인쇄회로기판을 발주할 수 있었는데, 이는 P로부터 이 사건 J파일을 취득함으로써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방법에 의할 때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 절약등의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J파일의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 사건 J파일이 공공연히 공유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O이 이 사건 J파일을 취득하고 사용하였을 뿐 역설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지 이 사건 J파일에 대한 역설계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역설계가 가능한 파일이더라도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23064 판결).

역설계가 언급된 민사사건 8건 중 3건은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 요건을 인정받았고, 5건 중 1건은 ‘역설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라고 판시하여 비공지성 요건은 인정되는 듯 실시하였으나 다른 이유(영업비밀 유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로 영업비밀성이 부정되어 기각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100917 판결), 나머지 4건은 역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성을 부정하였다.

역설계가 언급된 형사사건 3건 중 1건은 “역설계에 의하여 곡면 프로파일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영업비밀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7노2861 판결), 1건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노즐, 플런저 부품을 실제로 보고 역설계하여 대체품을 제작하였을 뿐 이 사건 도면을 활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역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로 판단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19노942 판결), 다른 1건은 역설계로 쉽게 정보

를 취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노1620 판결).

한편 법원은 “이 사건 지진가속도센서를 구성하는 부품 등에는 이미 회로판에 기판회로도라 부품명 및 부품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채무자들은, 이 사건 가속도센서를 구성하는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동종업계 기술자들은 채권자의 설계도면 없이도 이 사건 지진가속도센서를 개봉하기만 하면 제품을 역설계하여 동일한 모양 및 기능의 지진가속도센서를 제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B 등은 채권자가 채무자 D에 납품한 제품을 역설계하여 단기간 내에 동일한 성능의 제품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고 판시하여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유출하지 않았다는 채무자 측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카합10208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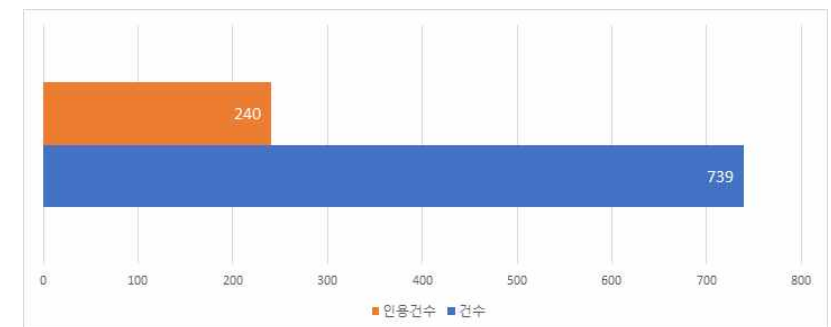
3. 영업비밀 유출 피해금액 분석

가. 손해배상청구 인용율 및 현황

2017. 1. 1.부터 2022. 12. 31.까지 신고된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민사 판결은 총 1,409건이고, 이 중에서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쟁점이 된 사건은 739건으로 파악되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인용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25. 영업비밀 민사 손해배상 인용율

건수	인용건수	인용율
739	240	3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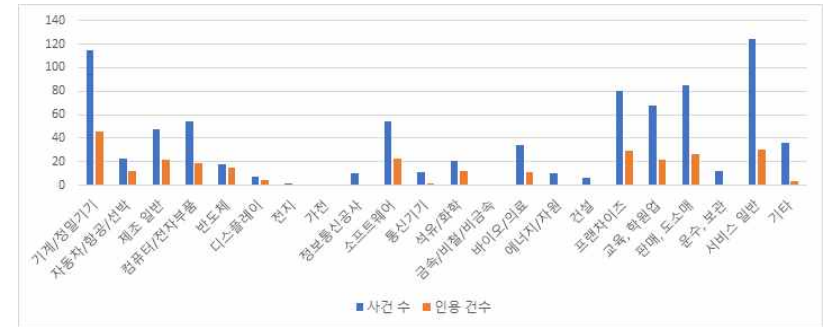


손해배상 사건의 업종별 인용율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26. 영업비밀 손해배상 사건 업종별 인용율⁸⁾

업종 대분류	업종 소분류	사건 수	인용 건수	인용율
제조업	기계/정밀기기	115	46	40%
	자동차/항공/선박	23	12	52.17%
	제조 일반	48	22	45.83%
전기/전자	컴퓨터/전자부품	54	19	35.19%
	반도체	18	15	83.33%
	디스플레이	7	4	57.14%
	전지	2	1	-
	가전	0	0	-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	10	1	10%
	소프트웨어	54	23	42.59%
	통신기기	11	2	18.18%
석유/화학	석유/화학	21	12	57.14%
금속/비철/비금속	금속/비철/비금속	1	0	-
바이오/의료	바이오/의료	34	11	32.35%
에너지/자원	에너지/자원	10	1	10%
건설	건설	6	0	-
서비스	프랜차이즈	80	29	36.25%
	교육, 학원업	68	22	32.35%
	판매, 도소매	85	26	30.59%
	운수, 보관	12	1	8.33%
	서비스 일반	124	30	24.19%
기타	기타	36	3	8.33%

8) 일부 기업은 두 개 이상의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중복 데이터 발생.



업종별 인용율 분석 결과, 반도체 업종의 손해배상 인용율이 83.3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와 석유/화학(각각 57.14%), 자동차/항공/선박(52.17%)의 인용율이 높았다. 대체로 기술 업종의 인용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인용율은 운수/보관, 기타 정보통신공사와 에너지/자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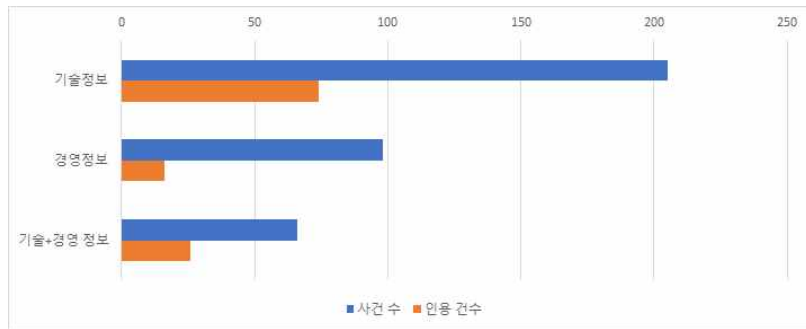
사건 수가 10건이 안 되는 업종의 경우 데이터가 부족하여 인용율을 따로 산정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정보 유형별로 손해배상 인용율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⁹⁾

표27. 영업비밀 손해배상 사건 정보 유형별 인용율

정보 유형	사건 수	인용 건수	인용율
기술정보	205	74	36.10%
경영정보	98	16	16.33%
기술+경영 정보	66	26	39.39%

9) 판결 이유에 정보 유형이 나타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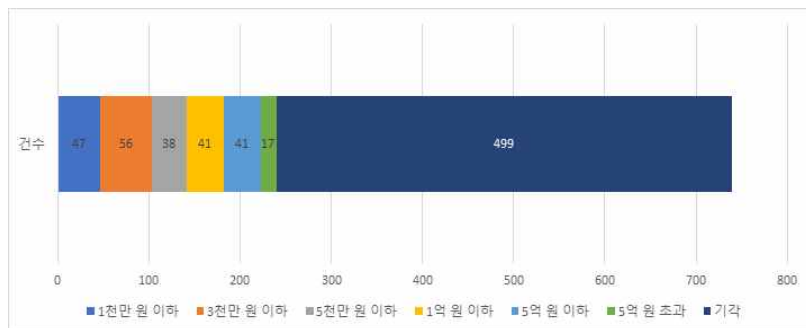


나. 손해배상액 분석

영업비밀 유출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1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내지 1억 원 이하, 1억 원 내지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로 구간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8. 영업비밀 침해 민사 손해배상액(판결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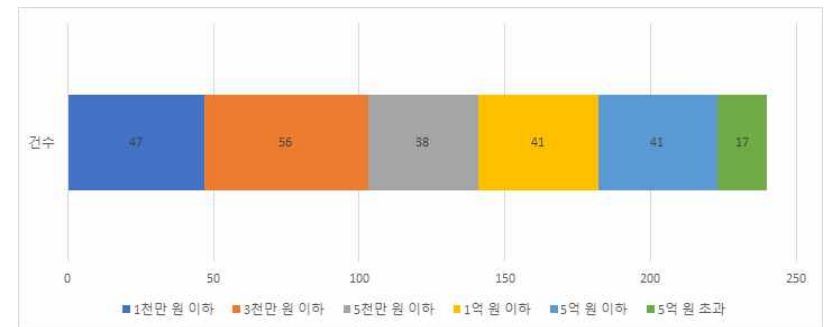
손해 판결금	1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기각	합계
건수	47	56	38	41	41	17	499	739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건 중에서 배상액 비율 분포는 아래와 같았다.

표29. 영업비밀 침해 민사 손해배상액 비율

손해 판결금	1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합계
건수	47	56	38	41	41	17	240
비율	19.58%	23.33%	15.83%	17.08%	17.08%	7.1%	100%



대체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이었으나, 판결금 5천만 원 이하가 58.74%를 차지하여 좀 더 많았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41.26%였다.

다음으로 영업비밀 유출 민사 손해배상 사건 중 원고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된 판결만을 모아 원고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에서 법원이 이를 얼마나 받아들여 인용 판결을 선고했는지 그 금액의 비율을 분석하였다(아래 표 참조).

표30. 영업비밀 손해배상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 비율 분석

	10% 이하	2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60% 이하	70% 이하	80% 이하	90% 이하	100% 이하	합계
건수	61	45	28	14	23	12	9	4	4	40	240
비율	25.42%	18.75%	11.67%	5.83%	9.58%	5%	3.75%	1.67%	1.67%	16.67%	100%

분석 결과 원고의 청구금액 대비하여 10% 이하만을 인용한 판결이 25.42%, 20%이하만 인용한 판결이 18.75%, 30%이하만 인용한 판결이 11.67%로 나타났다. 원고 청구금액 대비 30% 이하만을 인용한 판결이 55.84%에 달하여 과반을 넘었다. 이는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할 때 손해배상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적절한 손해액을 계산하지 못하거나, 변론에서 손해액을 입증해내는 데 실패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편 원고 청구금액이 100% 받아들여진 비율이 16.6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원고 청구에 대해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여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거나(무변론 판결의 경우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 소송 도중에 원고가 손해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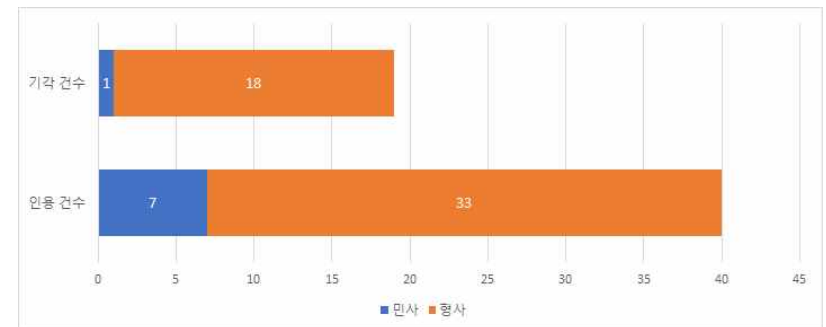
4. 타법과의 비교

o 산업기술보호법

영업비밀이 유출된 사건에서 동시에 산업기술보호법도 쟁점이 된 사건들이 있다. 양자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민사보다 형사에서 영업비밀 유출과 산업기술 유출이 동시에 적용된 사건이 훨씬 많았다.

표31. 영업비밀 유출과 산업기술 유출 쟁점 사건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동시 쟁점 사건	인용 건수	기각 건수
민사	8	7	1
형사	51	33	18
합계	59	40	19



산업기술 유출이 쟁점이 되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은 8건 중 단 1건이었는바(원고가 1억 6,000만원을 청구하여 1,000만원 인용.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3246 판결), 손해배상 관련하여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유출의 관련

성에 관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기는 어려웠다.

※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유출-침해죄) 등 유사 법률과 영업비밀 침해죄와의 비교

가. 서설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등)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유사 법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저작권법, 특허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 등의 죄로 함께 기소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죄명이 업무상배임이라고 할 것인데, 그 이유는 영업비밀 3요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비밀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보유자가 상당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무상배임죄로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대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였는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회사에서의 퇴직 전 지위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영업비밀과 흡사한 듯 다른 산업기술 역시 영업비밀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회사가 주장하는 기술이 포함된 파일 대부분이 이미 특허를 통하여 공개된 내용들이어서 해당 파일들을 복사하였다고 하여 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역시 기술 등 중요자산에 대해 비공개성을 탄핵하기 위해 문제 삼는 소송상 전략이지만, 이러한 주장은 영업비밀과 산업기밀의 특성을 잘못 이해하여 발생하

는 것으로 관련 법리는 아래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산업기술보호법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 고시, 공고, 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위 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목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들고 있는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도12266 판결).

이어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는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 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고시된 산업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기술 중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의 경우 산업발전법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도1614 판결). 또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로서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목적,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4조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 '유출', '침해'의 각 문언적 의미 등에 비추어, 첨단기술인 산업기술은 비밀을 유지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 기관 고유의 산업기술 이어야 한다.

다. 관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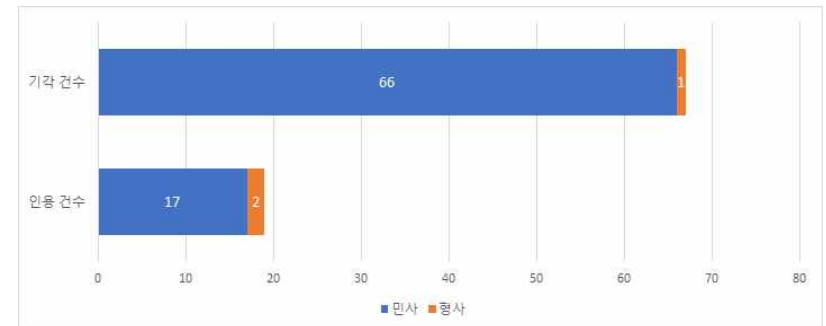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동종 업체에 이직하는 과정 또는 퇴직 후 중국에 있는 동종 업체로 이직하여 나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각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라 '산업기술'로 확인받은 각 기술들, 특히, 일부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의하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다)을 개인적으로 저장하고 따로 보관함으로써 유출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한 사례로서 법원은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 및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하였다.

o 부정경쟁행위(타인성과모용·아이디어탈취 등)

원고 또는 검사가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부정경쟁행위도 동시에 주장하여 쟁점이 된 사건들이 있다. 양자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과 반대로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행위가 동시에 쟁점이 된 사건이 형사보다 민사에서 훨씬 많았다.

표32.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행위 쟁점 사건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 동시 쟁점 사건	인용 건수	기각 건수
민사	83	17	66
형사	3	2	1
합계	86	19	67



영업비밀 유출과 동시에 부정경쟁행위가 쟁점이 되어 형사 기소된 사건은 단 3건 뿐이었다. 민사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행위가 동시에 쟁점이 된 사건이 83건에 달하였으나 부정경쟁행위로 인용된 건수는 17개로 약 20.48%에 그쳤다.

부정경쟁행위가 쟁점이 되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은 62건에 달하였으나, 인용된 건수는 16개, 기각된 건수는 46개로 나타나 승률은 25.81%에 그쳤다.

한편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가 동시에 쟁점이 된 사건 중에서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보면 (가)목 6건, (나)목 6건, (바)목 1건, (자)목 8건, (차)목 11건, (파)목¹⁰⁾ 62건으로 나타나 영업비밀 유출과 더불어 (파)목을 가장 많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¹¹⁾ 이는 아래(영업비밀 침해와 부정경쟁행위(타인성과모용·아이디어탈취 등)와의 관련성)에서 설명한 것처럼 (파)목이 (가)목 내지 (타)목의 부정경쟁행위 외에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적 조항으로 만들어진 것을 당사자들이 적극 이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33.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 쟁점 사건에서 부정경쟁행위별 분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파
민사	3	6	-	-	-	1	-	-	8	11	-	62
형사	3	-	-	-	-	-	-	-	-	-	-	-
합계	6	6	-	-	-	1	-	-	8	11	-	62

10)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조항은 구 부정경쟁방지법(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되어 있다가 현행법에서 같은 호 (파)목으로 이동되었다. 신구법 사이의 내용이 동일한바, 편의상 현행법률에 따라 표시하였다.

11) 원고가 (가)목 내지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중복하여 주장함에 따라 중복 데이터가 발생하였다.

※ 영업비밀 침해와 부정경쟁행위(타인성과모용·아이디어탈취 등)와의 관련성

가. 서설

민사사건에서 자신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에 관한 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비밀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영업비밀성이 부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주장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목 내지 (파)목 총 13가지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 (파)목은 (가)목 내지 (타)목의 부정경쟁행위 외에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적 조항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의 개별 규정 사이의 틈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라는 문구에서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 등을 투입하여 성과물을 구축했는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또는 피해 회사)가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가 비록 영업비밀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치 형사사건에서 상당한 비용과 노력으로 이루어 낸 “영업상 주요한 자산(또는 민사사건에서 전직(경업)금지의 경우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인정받아 업무상배임(또는 전직(경업)금지 인용 판결)으로 의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회사가 취해볼 수 있는 민사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즉, 부정경쟁행위 중 (파)목에서 말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물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인용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영업비밀보다 인정범위가 비교적 넓다고 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밖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파)목은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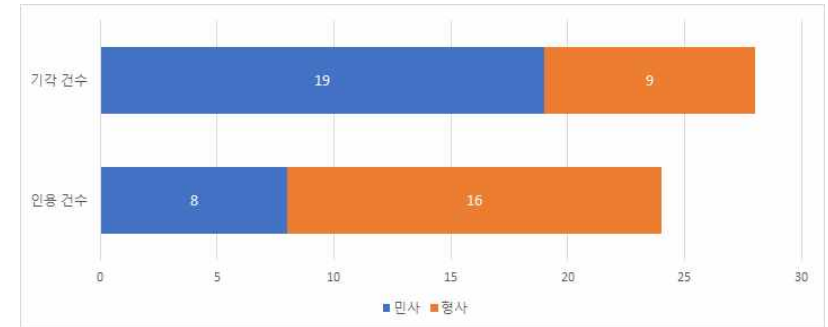
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 흡입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가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파)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6다276467).

o 저작권법

원고 또는 검사가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부정경쟁행위도 동시에 주장하여 쟁점이 된 사건들이 있다. 양자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과 반대로 영업비밀 유출과 저작권 위반이 동시에 쟁점이 된 사건이 형사보다 민사에서 훨씬 많았다.

표34. 영업비밀 유출과 저작권 쟁점 사건

	영업비밀 및 저작권 동시 쟁점 사건	인용 건수	기각 건수
민사	27	8	19
형사	25	16	9
합계	52	24	28



민·형사에 있어 영업비밀 유출과 저작권법이 동시에 쟁점이 된 사건 수는 비슷했다(민사 27건, 형사 25건). 하지만 분석대상 판결 수가 2,110개이고 이 중 민사 1,409개, 형사 701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형사에서 저작권이 동시에 쟁점이 된 사건이 더 많은 셈이다.

한편 저작권이 쟁점이 되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은 14건이었고, 이중 인용된 건수는 3개, 기각된 건수는 11개로 나타났다.

※ 영업비밀 침해와 저작권법과의 관련성

가. 서설

원고(또는 피해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설계에 관한 정보(설계도면)’,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코드’일 경우 회사의 업무상 저작물로 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피고(또는 피고인) 등이 설계 도면 등을 취득하여 회사의 동의 없이 타 회사로 가지고 간 경우 영업비밀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도 한다.

나. 관련 법리

어떤 기계장치를 표현하는 설계도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구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설령 동일한 기계장치를 표현하는 설계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도4848 판결). 따라서 만일 원고(또는 피해회사)가 보유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이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표현방법, 도면작성 방법에 따라 표현된 것으로서 누가 작성하더라도 달리 표현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령 작성자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설계도면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없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관련 사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주로 하는 피해회사는 ○○프로세서를 사용하면서 위 프로세서에 적합하도록 변형된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소스코드의 기능적 특성을 인정할 만한 운영체제를 개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특정 기능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부분은 개발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스코드는 저작물로서 보호할 만한 창작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o 업무상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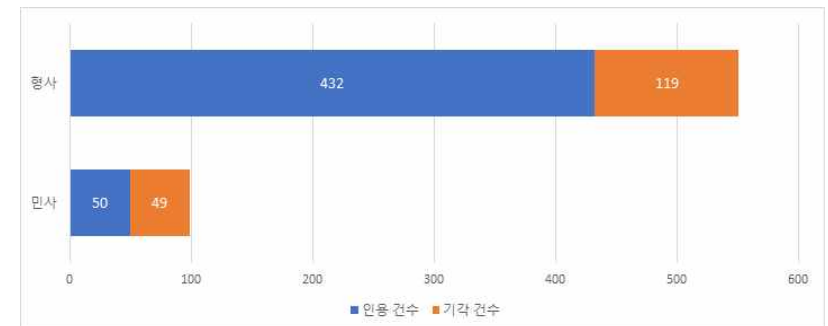
업무상배임죄는 영업비밀 유출 형사 사건에서 영업비밀 3요소(비밀관리성,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를 갖추지 못하여 유출 정보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에서 형사 처벌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원고 또는 검사가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영업상 중요자산 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도 동시에 주장하여 쟁점이 된 사건들이 많다. 양자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분석한 결과, 예상대로 민사보다 형사에서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배임이 동시에 쟁점이 된 사건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영업비밀 유출과 적용 빈도수가 가장 높고 관련성도 깊은 쟁점은 산업기술유출, 부정경쟁 행위, 저작권법위반, 업무상배임 중에서 단연 업무상배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35.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배임 쟁점 사건

	영업비밀유출 및 업무상배임 동시 쟁점 사건	인용 건수	기각 건수	인용률 또는 유죄율
민사	99	50	49	50.50%
형사	551	432	119	78.40%
합계	650	482	168	74.15%



민·형사 공히 업무상배임이 쟁점이 되어 인용된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민사의 경우 인용율이 50.50%(50건/99건), 형사의 경우 유죄율이 78.40%(432건/5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업무상배임 법리

가. 관련 법리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17도3808 판결).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9도3915 판결).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도9066 판결).

나. 관련 사례

1) 업무상배임(추상적 기술의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로 보지 않은 사례)

○○공정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가열부, 압출부, 냉각부 등의 공정 설비를 구축하여야 하고 설비를 구축한 이후에도 적정 소용 가공율과 열처리 조건을 발견하여야 하는 까닭에, ☆☆공정을 구현하는 업체는 다수 있지만 ○○가공을 구현하는 업체는 국내에서 피해사를 포함하여 2 내지 4개 업체에 불과하고 피해사가 제조한 ○○제품은 국내 자동차 부품 시장의 80 내지 90 퍼센트를 차지한다. 특히 ○○가공을 위한 각 공정별 공정 방법, 절차 및 열처리 온도 등 각 공정별 조건 등을 표준화한 자료들에는 특정 값을 입력하면 각 가공절차에 대한 조건 값이 표기되는 자동계산 시트도 포함되어 있어 위 자료들이 경쟁사에 유출되는 경우 경쟁사로서는 보다 손쉽게 ○○가공 공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설령 ○○과 관련된 추상적인 기술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사의 제품과 노하우는 상당한 기간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적인 데이터를 얻었을 때 비로소 그 데이터를 세부규격 삼아 상품화 · 양산할 수 있게 된 결과물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공정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 즉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더라도 그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 등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면 이 역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도9477 판결).

2) 업무상배임(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도4382 판결, 대법원 2010도9652 판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8도4022 판결). 이 사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파일들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유출하는 행위 자체로서 그 산업기술 자료의 시장교환가격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써 피해회사에게는 적어도 위 산업기술 자료가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 감소분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며, 위 재산상 이익 또는 재산상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 특허법위반

원고 또는 검사가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특허법위반도 동시에 주장하여 쟁점이 된 사건들이 드물게 있었다. 양자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분석한 결과, 영업비밀 유출과 특허법 위반이 동시에 쟁점이 된 사건이 민사에서는 12건(인용 3건, 기각 9건), 형사에서는 2건(유죄 1건, 무죄 1건)으로 파악됐다. 모수가 매우 적은바 이를 통해 영업비밀과 특허는 당사자들의 쟁점 주장과는 큰 관련이 없고,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비공지성 요건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특허 출원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영업비

밀로서의 비공지성 요건이 탈락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특허 출원으로 공개하는 기술 부분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기술 부분이 무엇이나에 따라 후자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고무적이었다. 즉 영업비밀 관점에서 특허 출원이 모순되지 않고 상호 보완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요건(법 제2조 제2호)의 비밀관리성이 ‘합리적인 노력’에서 ‘비밀로 관리된’로 완화되었지만,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이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 비밀관리 요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영업비밀에 관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III. 의의 및 한계

III. 의의 및 한계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내 첨단산업 분야의 영업비밀·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본 영업비밀 판결문 분석 연구에 착수하였다.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간 국내 영업비밀 관련 판결문을 토대로 영업비밀 유출 관련 피해 업종, 유출 주체 및 대응조치 등에 대한 분류 및 분석을 마쳤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당사자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금액 대비 법원의 인용금액을 토대로 기업의 기대치와 실제 판결 인용금액의 갭을 분석하였다. 또한 특허출원, 역분석(역설계) 등으로 인해 비공지성 요건이 탈락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영업비밀 침해죄와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유출·침해죄), 부정경쟁행위 저작권법, 형법 업무상배임 등 유사 법률과의 관계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영업비밀 보호기간 등 영업비밀 보호 관련 특이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당사자 기업(피해 기업)이 기대하는 손해배상 청구액과 법원의 실제 판결금과는 상당한 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에서 법원이 이를 얼마나 받아들여 인용 판결을 선고했는지 그 금액의 비율을 분석하였는바, 그 결과 원고 청구금액 대비 30% 이하만을 인용한 판결이 55.84%에 달하여 과반을 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할 때 손해배상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적절한 손해액을 계산하지 못하거나, 변론에서 손해액을

입증해내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추측된다.

둘째, 역분석이 가능하다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영업비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되었다. 법원은 단순히 역분석(역설계)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요건을 탈락시키지는 아니하는 경향이다. 구체적 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J파일이 공공연히 공유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O이 이 사건 J파일을 취득하고 사용하였을 뿐 역설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지 이 사건 J파일에 대한 역설계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역설계가 가능한 파일이더라도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시한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23064 판결).

셋째, 영업비밀 특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70건 중 무려 60건에서 영업비밀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산업 현장에서 자사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지정 및 표시/고지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소송 기술적으로 영업비밀을 적절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였다.

넷째, 원고 또는 검사가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특허법위반도 동시에 주장하여 쟁점이 된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특허 출원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 요건이 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회사가 특허 출원으로 공개하는 기술 부분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기술 부분이 무엇이나에 따라 후자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고무적이었다. 특허 출원이 영업비밀과 모순되지 않고

상호 보완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요건(법 제2조 제2호)의 비밀관리성이 ‘합리적인 노력’에서 ‘비밀로 관리된’로 완화되었지만,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이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 비밀관리 요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영업비밀에 관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나 한계도 있었다. 법원이 비밀관리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 규모별로 검토하는 요소와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나, 모수의 부족으로 기업 규모와 비밀관리 수준과의 뚜렷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한계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손해의 배상과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동시에 청구한 사건 수가 부족한 관계로, 영업비밀 유출 피해금액과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의 비교를 통한 피해규모를 파악하지는 못하였다.